

캘리포니아 사법부

캘리포니아 법원의 언어 접근 전략 계획

2015. 1. 22

요약본



요약본

이해관계자들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한 후, 캘리포니아주 언어 접근 계획(Language Access Plan) 공동 실무 그룹이 캘리포니아 법원의 언어 접근 전략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개요는 계획의 구성과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및 권고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공동 실무 그룹의 목표는 주 전체의 법원 이용자들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법부 전체의 접근법을 마련하기 위해 권고안을 작성하고 이 계획 권고사항 이행 시에 높은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개별 법원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언어 접근을 법원의 핵심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안이 7월 31일에 캘리포니아 법원에 게시되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2014년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대중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계획안을 개정하여 검토 및 채택을 위해 최종 계획을 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이전 조치

캘리포니아 사법부는 법원에서의 언어 접근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LEP) 모든 법원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고사항, 지침 및 일관된 주 전체 접근법을 제시하는 주 전체의 종합적 언어 접근 계획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영어 미숙 법원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마련하고자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주 언어 접근 계획 공동 실무 그룹을 조직하였습니다. 실무 그룹은 법원 통역자 자문 패널(Court Interpreters Advisory Panel), 접근 및 공정성 보장 자문 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roviding Access and Fairness)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언어 접근 컨설턴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방법론 및 프로세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다양성이 높은 주로서 약 7백만명의 영어 미숙 주민과 법원 이용자들이 있고 이들은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적 주 전체 언어 접근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는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법원 책임자들과 기타 관심 있는 언어 접근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몇 가지 포럼도 포함시켰습니다. 공동 실무 그룹은 법원 관리들과 재판장, 법원 통역자 조직(캘리포니아 통역자 연합 및 통역자 계약 그룹 포함) 및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련의 경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청회에서 참가자들은 언어 접근 계획의 초안을 검토하고 언어 접근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주요 해결과제와 기회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2014년 2월말 및 3월 초에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및 새크라멘토에서 언어 접근에 관한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제, 사실 자료, 초안 개요가 포함된 공청회 통지는 여러 언어로 작성하여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¹ 공청회에서

¹ 참조: LAP 공동 실무그룹 웹페이지, www.courts.ca.gov/LAP.htm.

전문가들인 지역, 주, 국가, 보건, 법원 및 입법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역자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공청회는 웹을 통해 동시 방송이 실시되었습니다. 공청회 후에는 오디오 및 서면 의견과 패널들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공동 실무 그룹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습니다.² 모든 개인 및 그룹들이 제시한 세심하고 다양한 관점들은 계획안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청회 후에 공동 실무 그룹은 적절한 계획 권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검토 분석하는 복잡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통찰력과 경험이 제시되었지만 계획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 가족법, 가정 폭력, 퇴거 등 다양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 체계를 이용해야 하는 영어 미숙자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법원 프로세스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재판 등 중요한 소송 절차에서 영어 미숙자들은 법원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 통역자들은 법원과 영어 미숙 당사자들 간에 정확하고 완전한 의사소통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고 영어 미숙자들이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거나 구제책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접근 서비스는 영어 미숙자가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요한 접촉점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어 미숙 당사자들은 어떤 구제책이나 법적 보호책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어디서 법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지 등 법적 대응책을 모색할 때 매우 기초적인 단계조차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언어 접근 서비스는 영어 미숙 이용자가 법원 정문에 도착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지원, 공적 교육 노력 및 웹 기반 액세스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언어 접근 서비스는 영어 미숙자가 법원에 들어갈 때 그리고 법원 내에서의 모든 접촉점에서, 예를 들어 자체 지원 센터, 대안 분쟁 해결 서비스, 서기관 카운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법원 행정요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면 언어 접근 계획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법원의 다른 서비스 분야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 접근 서비스의 확대는 언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통해서 일부 충족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다른 서비스의 부족한 자원을 전용하는 것이 아닌 해당 목적으로 지정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² Ibid.

-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영어 미숙 주민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종합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통적인 인구통계 데이터 소스는 주에 거주하는 기존 영어 미숙 주민의 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적으로 고립된 주민, 이민 근로자 및 모국어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데이터 소스는 신흥 언어를 적절히 추적하지도 못합니다.
-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공인/등록 법원 통역자 풀이 예상되는 수요를 충족할만큼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이 남는데, 그 이유는 모든 법원 소송 절차 및 접촉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를 확대하는 비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추정이 필요하고 기술, 교육, 표지판 등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디오 원격 통역, 전화 통역, 웹 기반 액세스, 다국어 시청각 도구 등의 기술은 언어 접근 서비스를 주 전체에서 제공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상황에 적절한 기술 사용을 활용하고 적절한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합니다.
-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법원 체계에 대한 의미 있는 언어 접근을 보장하려는 노력에는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 이해관계자들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사회복지 서비스 조직, 가정 폭력 상담사, 정신 건강 서비스 업체,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등), 법무 관련 파트너(법률 서비스 제공자, 법원 통역자 조직, 특별구 변호사, 국선 변호인, 사법당국, 교도소, 보호관찰국, 행정 당국 등) 및 언어 접근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 사법부는 교육 초기 단계 특히 고등학교에서부터 예비 통역자 채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지역사회 전문대 및 대학교 프로그램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법원은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예비 통역자 및 2개 국어 가능 법원 직원 확보를 위한 통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 법관, 법원 직원 및 보안 요원들에게 (1) 법원 이용자의 모든 접촉점에서 그들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대응하고 (2) 영어에 미숙한 법원 이용자를 잘 대우하기 위해 다양한 소수민족 주민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3) 통역자들이 인증을 받거나 적절한 임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4) 양질의 언어 접근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획의 목표

공동 실무 그룹은 아래의 여덟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식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획이 개발되었습니다.

- **목표 1: 언어 필요성의 조기 식별 및 데이터 수집 향상**
사법위원회는 영어 미숙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 주 전반의 언어 접근 필요성을 파악하고, 법원은 지역 사회의 특정한 언어 접근 필요성을 파악하여 법원에서 영어 미숙 주민들과의 상호작용 시에 최대한 조기에 이행할 것입니다.
- **목표 2: 모든 사법 절차에서 적격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
2017년까지 (자원이 허락할 경우 즉시 시작할 예정) 캘리포니아 법원의 모든 법정 절차에서 영어 미숙자들에게 적격 통역자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법원 명령 및 법원 운영 사안에서 적격 통역자를 제공할 것입니다.³
- **목표 3: 사법 절차 밖의 모든 접촉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
2020년까지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모든 접촉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원은 이용 가능 언어를 대중에게 공시할 것입니다.
- **목표 4: 양질의 다중 언어 번역 및 표지판 제공**
법원의 지원을 받는 사법위원회는 모든 적절한 언어로 문서 및 법원 표지판을 최고 품질로 번역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과 자원을 파악할 것입니다.
- **목표 5: 언어 접근 제공자의 채용 및 교육을 통한 고품질 언어 접근 서비스 확대**
법원과 사법위원회는 모든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법원과 사법위원회는 2개 국어 가능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해당 서비스에 적합한 언어능력 표준을 수립하고, 모든 언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통역자나 2개 국어 구사 법원 직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할 것입니다.
- **목표 6: 언어 접근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사법부 교육 실시**
법관, 법원 행정요원 및 법원 직원들에게 언어 접근 정책, 절차 및 표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어 미숙자들의 필요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적으로 능숙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 **목표 7: 언어 접근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지원**
사법위원회와 법원은 영어 미숙 주민과 해당 서비스 조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입니다.

³ 본 계획의 맥락에서 “제공”(예: “적격 법원 통역자 제공”)이란 영어 미숙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원가를 보상 받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목표 8: 계획 이행 및 언어 접근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자금 지원 및 법률 파악**
언어 접근 서비스의 체계적 확대를 위해 사법위원회는 (1) 여타 법원 서비스 감축 없이 적절한 자금을 확보하고 (2) 법률 개정 및 법원 규칙 변경 등 적절한 법률 변경안을 제안하고 (3)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의 모니터링 및 최고 품질의 언어 서비스 유지를 위해 언어 접근 계획 이행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책 및 비용 관련 시사점

*캘리포니아 법원의 언어 접근 전략 계획*은 캘리포니아의 7백만 영어 미숙 주민과 예상 법원 이용자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의 언어 접근성 확대, 향상을 위해 점진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1,800여 명의 고등 교육을 받은 인증/등록 법원 통역자가 있는데 이는 다른 주보다 훨씬 많은 수이며 연간 총 통역 서비스 제공일은 215,000일이고 매년 비용은 9천2백만 달러에 달합니다.⁴ 언어 접근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창의적인 솔루션과 추가 법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획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적했듯이 모든 법원 이용자들이 특히 민사 분야에서 주 법원을 의미 있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어 접근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창의적인 솔루션 그리고 여타 핵심적 법원 운영을 제한하지 않고 추가 법원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획의 핵심적 목표 (목표 2) 중 하나는 “2017년까지 (자원이 허락할 경우 즉시 시작할 예정) 캘리포니아 법원의 모든 법정 절차에서 영어 미숙자들에게 적격 통역자를 제공하고, 2020년까지는 모든 법원 명령 및 법원 운영 사안에서 적격 통역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퇴거, 보호자 및 후원인 자격, 자녀 양육 관련 가정 문제, 친권 상실 등 다수의 민사 사건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 명령에 의해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사(예: 화해 조정, 강제 중재 등)도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접근 계획의 목적은 민사 소송 및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행사에서 통역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즉시 도입하고, 전체 언어 접근 이행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행 노력

이 과제를 완료한 후 공동 실무 그룹은 사법위원회의 집행 계획 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두 개의 그룹을 즉시 조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은 (1) 언어 접근 이행 태스크 포스(모든 58개 카운티에서 언어 접근 계획의 이행 방법 및 수단을 개발하여 권고하고 관련 자문 그룹과 사법 위원회 직원들의 이행 노력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그리고 (2) 번역 위원회(사법위원회 양식, 서면 자료, 시청각 도구에 대한 번역 규약을 감독)입니다.

⁴ 2013-2014 년에 TCTF(Trial Court Trust Fund) 프로그램 45.45 (법원 통역자)를 통해서 보상 가능한 주 전체 법원 통역자 발생 비용 총액은 \$92,471,280 달러였습니다.

권고사항의 단계적 이행

법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언어 접근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권고사항이 향후 5년 (2015~2020) 동안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 A(별첨)에서는 계획의 모든 권고사항을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그룹화하였습니다.

- **1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긴급하며 이미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사항의 이행은 1년차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
- **2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성이 덜하므로 1단계 과업 완료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의 이행은 즉시 시작되며 어떤 경우에도 2~3년차(2016~2017)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 **3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거나 2020년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본 절차와 시간 및 자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즉시 시작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필요한 기본 절차가 구비된 후에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록 A: 권고사항의 단계적 이행

1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긴급하며 이미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권고사항의 이행은 1년차 (2015년)부터 시작됩니다.

#1 언어 접근 필요성 파악. 법원은 당사자, 증인 또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각 영어 미숙자들의 언어 접근 필요성을 가능하면 가장 빠른 접촉점에서 파악합니다. 언어 필요성은 사건 관리 시스템 또는 다른 사건 기록 또는 파일에 명확히 일관되게 문서화 해야 하며, 기존 사건 관리 기록 시스템을 감안하여 적절할 경우 이 기능이 향후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시스템 개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단계)

#2 언어 서비스 요청. 법원의 언어 서비스 제공 및 거부 내용이 법원의 사건 정보 시스템에서 추적해야 하지만, 법원의 역량을 적절히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 또는 거절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가능한 신속히 해당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시스템을 수정/업데이트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2 단계)

#3 법무 파트너의 언어 필요성 의사소통에 관한 규약. 법원은 법무 파트너들이 법원 시스템에서 최대한 이른 접촉점에서 구두 통역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음을 법원에 알려주도록 하는 규약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단계)

#4 영어 미숙자의 자가 식별 방안. 법원은 영어 미숙자가 법원 시스템에 접촉할 때 언어 접근 서비스 필요성을 스스로 식별하도록 초청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 "I speak" 카드). 자가 식별 방안이 없을 경우 법관 및 법원 직원이 적극적으로 법원 이용자의 언어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단계)

#5 법원 이용자들을 위한 언어 접근 서비스 가용성에 관한 정보. 법원은 법원 이용자와 법원 간에 가장 이른 접촉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의 가용성에 관하여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통지에는 정확하고 적절할 경우 언어 접근 서비스가 무료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언어 접근 서비스가 법원 절차의 초기에 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언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사건 처리 전체 기간에 걸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지는 영어 및 최대 다섯 개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섯 개 언어의 선택은 법무 파트너들(법무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영어 미숙자 지원 업체)과 협력하여 그들의 정보를 통해 평가한 현지 지역 사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통지는 대중 및 법무 파트너, 법률 서비스 대행사,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영어 미숙자 지원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1 단계)

#6 언어 서비스 비용 보고 확대. 사법위원회와 법원은 통역자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하고 언어 서비스 비용 보고를 확대하여 번역, 통역자 또는 언어 서비스 조정 업무, 2개 국어 구사 직원의 차등 급여 및 다중 언어 표지판 또는 기술 등 기타 언어 접근 서비스 및 도구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고 내용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정보는

법원이 언어 접근 서비스를 민사 사건으로 확대할 때 자금 지원에 대해 입증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1 단계)

#8 법원 통역자를 모든 민사 소송으로 확대 적용.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증거법 섹션 756(부록 H 참조)에 우선 순위로 명시된 민사 소송 및 가정법원 서비스 중재를 포함하여 모든 법원 소송 절차에서 영어 미숙 법원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2 단계)

#9 예비 자격 요건.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의 규칙 2.893이 개정될 때까지는 명분이 있을 경우 아래 예비 자격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공인 또는 미등록 법원 통역자만이 민사 또는 형사상 법원 소송 절차에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현재 형사 또는 청소년 범죄 사안에 대해 규칙 2.89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사안의 경우 기존 법원 규정이 개정된 후에 명시할 예정임). (예비 자격 절차에 관한 법관 및 법원 직원 교육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 50을 참조하고, 민사 사건을 포함하기 위한 규칙 2.893 개정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 70을 참조하십시오.) (1, 2 단계)

#10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절차에서 적격 통역자 제공. 자원이 허락할 경우 즉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법원이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사에서 모든 영어 미숙 소송 당사자, 증인 및 사건의 특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격 법원 통역자를 제공할 것입니다. (1, 2, 3 단계)

#12 직접 통역 선호. 법원 소송 절차에서 공인 등록 법원 통역자를 직접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법원은 특정 사안에 적절할 경우 원격 통역을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격 통역은 영어 미숙 이용자가 완전하고 의미 있게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13 법정에서의 원격 통역. 법정에서 원격 통역을 이용할 경우, 법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록 B에 명시된 원격 통역 전제사항, 고려사항 및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계)

#14 원격 통역의 최소 기술 요건. 이행 태스크 포스가 원격 통역에 관한 최소 기술 요건을 정립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동시 통역 및 순차 통역에 대한 최소 요건도 포함될 것입니다. (1 단계)

#15 원격 통역을 위한 비디오 활용. 원격 통역을 활용하는 법원은 전화 통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법정 통역을 위해 최신 오디오 장비와 함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단계)

#16 화상 원격 통역 시범 프로젝트. 사법위원회는 사법부 전술적 기술 계획 2014-2016(Tactical Plan for Technology 2014-2016)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능하면 적절한 데이터 즉 적법 절차 문제, 참가자 만족도, 원격 통역을 함으로써 예비 적격 통역자가 아닌 인증된 등록 통역자의 이용도가 높아졌는지 여부, (순차 통역 및 동시 통역을 위한) 다양한 가용 기술의 효율성, 비용-효용 분석 등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영어 미숙 이용자들이 법원 절차에 완전하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다면 사법위원회가 이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중에 법원이 자체적으로 원격 통역을 진행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단계)

#18 다중 언어 표준 비디오 작성. 사법위원회는 (지역화가 아닌) 일반화된 법률 정보에 적합한 다량의 사건 유형으로 다중 언어 표준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주에서 사용되는 8대 언어로 법원에 제공하고 기타 언어에 대해서는 자막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단계)

#19 통역자 자격 정보 검증. 2015년 1월부터 정부 법령 섹션 68561(g) 및 (f)에 따라 법원 행정 요원들과 함께 법관은 선임되는 통역자가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에 있는 자격 정보를 제시하고 통역자 선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의 교육에 관해 설명하는 권고사항 50번 참조.) (1 단계)

#22 이해 상충 회피.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비공인 미등록 통역자를 지명할 때 법원은 이해 상충이 있거나 사안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해서는 안 됩니다. (1 단계)

#23 미성년 통역자 지명. 미성년자는 법정 절차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활동에서 통역하도록 지명될 수 없습니다. (1 단계)

#25 언어 접근 담당직 또는 담당자 지정. 각 카운티의 법원은 모든 법원 이용자와 법원 직원 및 법관들을 위한 언어 접근 자원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 직위나 직원을 지명해야 합니다. 해당자는 법원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법원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요청에 따라 법원의 모든 다중언어 서면 정보에 접근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영어 미숙 이용자와 법원 직원이 법원 언어 접근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1 단계)

#26 중요한 접촉점 식별. 법원은 영어 미숙 이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접촉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가능할 경우 해당 장소에 유자격 2개 국어 가능 직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해당 장소에서 2개 국어 가능 직원의 적절한 자격 수준에 관한 예상 표준을 설명하는 권고사항 47번을 참조 하십시오.) (1 단계)

#28 2개 국어 가능 직원의 채용. 법원은 해당 카운티에서 가장 흔한 언어에 능통한 2개 국어 가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개 국어 가능 신청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은 지역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및 대학교 등 지역 교육기관에 지원을 제공하여 법원의 2개 국어 가능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력 기회를 촉진해야 합니다. (1 단계)

#34 2개 국어 가능 자원 봉사자 활용. 법원은 법원 소송절차 외에 필요 시 다른 접촉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개 국어 가능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2개 국어 가능 자원 봉사자 및 인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1 단계)

#36 번역 위원회 수립. 사법위원회는 번역 위원회를 수립하여 사법위원회 양식, 서면 자료 및 시청각 도구의 번역을 위한 번역 규정을 개발하여 공식화 할 것입니다. 번역 위원회는 통역자 조직 및 법원과 협력하여 모든 공인 언어에 대한 법률 용어집을 마련하고 이 때 법률 용어 번역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번역 위원회의 책임에는 번역자의 자격, 자료 번역의 수선 순위 결정, 조정 및 감독 업무가 포함됩니다. 번역자의 자격에는 법원 또는 법률 전문성 보유 요건이 포함되고, 미국번역가협회(ATA) 인증을 받았거나 경험, 교육 및 조회 내용을 바탕으로 번역을 제공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법위원회의 번역 규약이 수립되고 나면, 개별 법원은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현지 양식, 정보 자료, 기록물 및 동영상의 품질 관리 및 번역 절차를 유사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지방 법원 웹사이트 정보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번역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들이 현지 커뮤니티 조직과 제휴하여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1 단계)

#37 주 전체 다중 언어 샘플 및 템플릿.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협조하여, 주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한 법원 이용자용 다중 언어 정보 샘플과 템플릿을 제공할 것입니다. (1 단계)

#38 번역물의 웹 게시. 사법위원회 직원은 양식 및 정보 / 교육 자료 번역물이 발생하면 대중들을 위해 캘리포니아 법원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법원에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법원이 그 게시물을 자체 웹사이트에 링크하도록 할 것입니다. (1 단계)

#40 법원 명령의 번역. 법원은 법원 명령의 즉석 번역을 제공하고, 필요 시 이 명령의 서면 번역본을 영어 미숙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 법원은 적절한 사법위원회 양식의 번역본을 제공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이 특정 법원 명령을 번역된 양식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 단계)

#43 통역자 자격 표준. 법원, 사법위원회 및 법원 통역자 자문 패널(CIAP)은 영어 미숙자들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통역자들이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합니다. 기존 자격 표준은 계속 유효하며 CIAP가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1 단계)

#44 새로운 통역자를 위한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법원에서 근무하는 신규 통역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주 전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1 단계)

#45 예비 통역자 교육. 사법위원회와 법원은 통역자 조직 및 교육기관(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및 주립 대학 포함)과 협조하여 예비 통역자들이 자격 시험에 합격하도록 잘 대비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노력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상 시험 준비 코스 및 테스트 개발을 위한 제휴
- 모든 법률 분야에서 예비 통역자들을 교육하고 준비시키기 위해 법원 및 관련 법률 환경에서 인턴십과 멘토십 기회를 마련함 (예: 법률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법률 전문가들과 협조)

(1 단계)

#46 민사 사건에 관한 통역자 교육 및 원격 통역. 사법위원회, 통역자 조직 및 교육 그룹이 협조하여 민사 사건에서 통역을 수행하거나 원격 통역을 제공할 사람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단계)

#47 2 개 국어 가능 직원의 언어 능력 표준. 법원은 영어 미숙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2개 국어 가능 직원이 자신의 취급 언어에 능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원이 2개 국어 가능 직원으로 지정한 모든 직원들은 최소한 미국 외국어 교육 위원회(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가이드라인에 정의된 “intermediate mid”에 상응하는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록 F 참조.) 법원은 사법위원회의 법원 언어 접근 지원 프로그램(CLASP) 유닛을 통해 제공되는 기존 구두 언어능력 시험(Oral Proficiency Exam)을 이용하여 직원의 외국어 능력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언어 능력을 판단할 때 2개 국어 가능 직원의 자체 평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1 단계)

#48 2 개 국어 가능 직원에 대한 표준 및 온라인 교육. 지정된 최소 요건 외에도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협력하여 (a) 법정 내에서의 특정 대중 접촉 지점에 대한 언어 능력 표준을 식별하고 (b) 2개 국어 가능 직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1 단계)

#50 언어 접근 계획에 관한 사법부 교육. 법관(임시 법관 포함), 법원 행정요원 및 법원 직원들은 본 언어 접근 계획에 명시된 사법부의 언어 접근 및 요건, 그리고 해당 개별 법원의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정책이 갱신/변경되면 법원을 추가적인 교육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역자가 관련된 법원 절차 관리를 위한 최적의 방법 - 통역에 필요한 정신적 노력과 집중력의 이해, 통역자 피로도도에 대한 도전, 빠른 속도의 언어 및 대화 통제 필요성, 해당 시 팀 통역의 고려사항 등 포함
- 통역 중에 이슈를 명확히 하고 수행 장애요소를 보고해야 하는 통역자의 윤리적 책임
- 임시 적격 통역자의 지명 및 이용에 관한 절차, 그리고 요구 시 영어 미숙 이용자의 통역자 서비스 포기에 관한 필수 절차
- 통역자의 자격증명을 기록으로 확인하는 법률 요건
- 원격 통역 제공을 위해 이용 가능한 기술과 최소한의 기술 및 운영 표준
- 문화적으로 능숙한 방식으로 영어 미숙자와 함께 일함

사법위원회의 직원은 교육 커리큘럼과 모든 교육 구성요소에 상응하는 자료 매뉴얼을 개발하여 모든 법원에 배포하고 현지 필요에 따라 조정하도록 합니다. (1 단계)

#52 언어 접근에 대한 벤치 카드. 사법위원회 직원은 벤치 사무관이 법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문제 및 원격 통역 정책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적 언어 접근 정책 및 절차와 가용 자원을 요약 설명하는 벤치 카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1 단계)

#56 충분한 자금 지원 지지. 사법부는 종합적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자금 지원 요청에는 언어 접근 계획의 점진적, 단계적 이행이

반영되어야 하고 그 요청으로 인하여 여타 법원 서비스나 운영 자금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단계)

#57 자금 요청 데이터 활용. 종합적 언어 접근 서비스에 필요한 자금 요청은 본 언어 접근 계획의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식별하는 최선의 가용 자료 제시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는 빈곤한 당사자들이 포함된 민사 사건에 대해 프로그램 45.45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최근의 사법위원회 결정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 2015 언어 필요성 및 통역자 활용 보고를 위해 수집된 정보, 자원 평가 연구(법원 직원의 작업 부하 고찰) 및 기타 법원 기록(예: 영어 미숙자에 관한 자체 지원 센터 기록)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단계)

#58 사법위원회가 기타 자금 지원 기회 모색. 사법위원회는 연방, 주 또는 비영리 단체(예:)로부터 적절한 자금 확보 노력을 모색할 것이며, 이는 특히 예를 들어 문서 번역 또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일회성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1 단계)

#59 법원이 기타 자금 지원 기회 모색. 법원은 연방, 주 또는 지방 수준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자금 확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공익 재단, 주 또는 지방 변호사 협회, 연방 / 주 /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일회성 또는 지속적 보조금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 단계)

#60 언어 접근 이행 태스크 포스. 사법위원회는 이행 계획 개발을 위해 언어 접근 이행 태스크 포스(Language Access Implementation Task Force, 가칭)을 조직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태스크 포스 회원에는 법원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법관, 법원 행정요원, 법원 통역자, 법률 서비스 제공자, 영어 미숙 이용자와 자주 일하는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소요 비용의 일환으로 LAP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비용을 식별합니다. 이행 태스크 포스는 관련 자문 그룹 및 사법위원회 직원과 이행에 대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타당성과 가용 자원을 기준으로 이행 계획을 모니터링 / 조정할 유연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1 단계)

#61 준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이행 태스크 포스는 본 언어 접근 계획의 준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여기에는 주 전체의 언어 접근성에 미치는 계획의 효과를 감독하고, 개별 법원 차원에서 계획의 지속적인 조정 및 개선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1 단계)

#62 단일 이의신청 양식. 이행 태스크 포스는 주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 서비스의 제공 및 미제공에 관한 불만을 등록할 수 있는 단일 양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양식은 법정에서 하드 카피로 제공하고 온라인에서도 제공하며, 전자식으로 작성하거나 다운로드하여 인쇄한 후 서면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지방 또는 주 전체 차원에서 언어 접근성과 관련된 우려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의신청 양식은 본 계획의 아래 권고사항에서 식별된 여러 프로세스의 일부로 사용됩니다. (1 단계)

#63 언어 접근 서비스 관련 지역 차원의 이의신청. 개별 법원은 영어 미숙 이용자, 그들의 지지자 및 변호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의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이나 미제공에 관한 불만(현지에서 작성된 번역물 관련 문제 포함)을 제출할 때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지방 법원은 이행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절차가 개발된 후 그에 따라 해당 지역 절차를 작성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언어 접근 계획의 전반적 이행 및 성공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사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단계)

#66 언어 접근 자료의 주 전체 저장소.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언어 접근성 확장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또는 개발될 언어 접근 자료를 보관할 주 전체 저장소를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는 번역 자료, 시청각 도구, 본 계약에서 식별된 기타 자료가 포함됩니다. (1 단계)

#67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계획 채택. 캘리포니아 항소법원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본 언어 접근 계획의 해당 부분을 논의한 후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채택해야 합니다. (1 단계)

#69 정당한 이유에 대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사법위원회는 민사 사건에서 무자격 법원 통역자를 지명할 경우에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1 단계)

#70 민사 소송에서 통역자 지명에 관한 법원 규정 개정. 사법위원회는 민사 소송에서 무자격 통역자의 지명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 2.893을 개정해야 합니다. (1 단계)

#75 통역자 포기 관련 정책. 이행 태스크 포스는 영어 미숙자의 통역 서비스 포기 요청에 대응할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책은 모든 서비스 포기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량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호인과 상담한 후에 포기하였고, 해당 법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표준을 규정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포기의 적절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여타 요인들에 대응하며, 예를 들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포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역자가 필요한지 여부, 포기를 기록에 기입하고 소송의 공식 기록이 없을 경우 서면에 확실히 기록하고, 당사자가 언제든지 포기를 무효화를 요구하거나 법원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무효화하는 명령을 발부하고 모든 추가 진행을 위해 통역자를 지명하는 조치 등입니다. 무료 통역자 서비스에 대한 접근 측면에서 포기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이라는 점을 정책에 반영해야 하고, 이행 태스크 포스는 필요한 정책 변경을 식별하기 위해 포기 이용 내용을 추적할 것입니다. (1 단계)

2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매우 중요하지만 긴급성이 덜하므로 1단계 과업 완료 후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의 이행은 즉시 시작되며 어떤 경우에도 2~3년차(2016~2017)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2 언어 서비스 요청. 법원의 언어 서비스 제공 및 거부 내용이 법원의 사건 정보 시스템에서 추적해야 하지만, 법원의 역량을 적절히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 또는 거절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가능한 신속히 해당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 시스템을 수정/업데이트 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1, 2 단계)

#7 미국 통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데이터 검토. 사법위원회와 법원은 예상되는 영어 미숙 법원 이용자들의 수와 언어를 예측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항상 이 목적을 포함하여 법원 및 사법위원회는 미국 통계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데이터 출처(예: 학교 시스템, 건강 부서, 카운티 사회 서비스, 지역 커뮤니티 당국)도 살펴야 합니다. (2 단계)

#8 법원 통역자를 모든 민사 소송으로 확대 적용.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증거법 섹션 756(부록 H 참조)에 우선 순위로 명시된 민사 소송 및 가정법원 서비스 중재를 포함하여 모든 법원 소송 절차에서 영어 미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1, 2 단계)

#9 예비 자격 요건.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의 규칙 2.893이 개정될 때까지는 명분이 있을 경우 아래 예비 자격 절차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비공인 또는 미등록 법원 통역자만이 민사 또는 형사상 법원 소송 절차에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이들 절차는 현재 형사 또는 청소년 범죄 사안에 대해 규칙 2.89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사안의 경우 기존 법원 규정이 개정된 후에 명시할 예정임). (예비 자격 절차에 관한 법관 및 법원 직원 교육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 50을 참조하고, 민사 사건을 포함하기 위한 규칙 2.893 개정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 70을 참조하십시오.) (1, 2 단계)

#10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절차에서 적격 통역자 제공. 자원이 허락할 경우 즉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법원이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사에서 모든 영어 미숙 소송 당사자, 증인 및 사건의 특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격 법원 통역자를 제공할 것입니다. (1, 2, 3 단계)

#11 법원 명령 발부 시 서비스 제공자의 언어 접근성 고려. 법원 명령이 명령한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영어 미숙 개인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의 언어 역량 부족 때문에 법관이 서비스 참여를 명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영어 미숙자들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 결과서 및 명령을 작성할 때 법원은 프로그램이 영어 미숙 이용자의 능력이 법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2 단계)

#17 원격 통역자 중앙 풀에 대한 시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의 숙련된 공인 등록 통역자의 활용 및 가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법위원회는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의 마련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공인 등록 통역자들이 짧은 통지를 받고서도 원격 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법원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계)

#20 지역 조정 시스템 확대. 사법위원회는 기존의 공식적 지역 조정 시스템을 확대하여 주 전체에서 법원간 교차 할당 및 법원 소송에 대한 통역자 일정 수립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법정외 행사에 대한 2개 국어 가능 직원 및 통역자 조정에 관한 내용은 권고사항 30을 참고하십시오.) (2 단계)

#21 법원 통역자 일정 조정 방법. 법원은 통역자를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정 조정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영어 미숙자들이 법원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2 단계)

#24 2개 국어 가능 직원의 임명.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법원은 2개 국어 가능 법원 직원을 법정 소송절차에 투입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법원이 직원을 임명할 경우 해당자는 반드시 예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단계)

#27 법원 직원들에게 언어 접근 도구 제공. 대중을 상대하는 모든 법원 직원들은 번역된 자료와 리소스, 다중 언어 용어집 및 “I speak” 카드 등 언어 지원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원 이용자의 모국어를 파악하여 언어 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장소로 안내하고, 영어 미숙자에게 해당 언어로 된 브로셔, 지침서 또는 기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단계)

#29 2개 국어 가능 직원을 없을 경우에 대비한 규약 개발. 법원은 2개 국어 가능 직원이 없는 경우에 영어 미숙자가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약서나 절차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 통역자 조정자가 대기하면서 어떤 통역자나 직원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고 사무실이나 자체 지원 센터에서 적절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2개 국어 가능 직원을 전화로 연결하거나 원격 통역을 활용하는 등 원격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2 단계)

#30 법원 간에 2개 국어 가능 직원 및 통역자 공유를 촉진하는 정책. 사법위원회는 법원 소송 절차 밖에서 언어 지원을 위해 원격 기술을 통해 2개 국어 가능 직원 및 공인 등록 법원 통역자를 법원 간에 공유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의 채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단계)

#31 카운터 및 자체 지원 센터에서 원격 지원을 위한 시범 활동. 법원과 사법위원회는 카운터 지원 및 자체 지원 센터의 원격 통역자 서비스 활용을 위해 시범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법원이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별 수수료 모델 또는 2개 국어 가능 전문가의 법원/중앙 은행 등 다양한 솔루션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2 단계)

#32 워크숍을 위한 원격 지원 시범 활동. 법원은 전화, 화상회의(WebEx, Skype) 또는 기타 기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영어가 아닌 언어로 진행되는 워크숍/교육 또는 “정보의 밤”에 법원 간 원격 참여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단계)

#33 법원 지명 전문가의 자격. 영어가 미숙한 법원 이용자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어 미숙자들을 전문가에게 소개하기 전에 심리학자, 중재자, 후견인 등 법원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언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한 언어 역량이 없을 경우 법원은 다른 언어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2개 국어 가능 전문가 또는 적격 통역자를 통하여 언어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거나 계약을 맺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단계)

#39 법정 표지판. 사법위원회의 직원은 법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표지판을 일반 언어로 번역하여 줌으로써 법원을 지원하고 문자 및 번역의 필요성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이콘, 기호 및 디스플레이 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다 현지화된 표지판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모든 공공 표지판을 영어 및 최대 다섯 개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며, 다섯 개 언어의 선택은 법무 파트너들(법무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영어 미숙자 지원 업체)과 협력하여 그들의 정보를 통해 평가한 현지 지역 사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모든 해당 자료는 최소한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단계)

#41 접근 가능한 법정. 사법위원회는 법원과 협조하여, 모든 영어 미숙자들이 법원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신규 법정을 건축하는 노력을 하고 기존 법정 공간의 재설계를 착수해야 합니다. (2 단계)

#42 길찾기 전략. 사법위원회 직원들은 영어 미숙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더 좋은 길찾는 방법, 다중언어(정적 및 동적) 표지판 및 기타 디자인 전략에 관심이 있는 법원에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2 단계)

#49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채용 전략. 사법위원회 직원들은 교육기관, 커뮤니티 조직 및 통역자 조직과 협조하여 시장 여건을 파악하는 등 채용 전략을 파악하여 2개 국어 가능자들이 통역 직업을 모색하거나 법원에서 2개 국어 가능 직원으로서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2 단계)

#51 인트라넷의 언어 접근 리소스. 지역 및 주 전체 언어 접근 자원, 본 계획을 통해서 파악된 교육훈련 구성요소, 용어집, 표지판 및 기타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 도구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원 인트라넷을 통하여 모든 법원 직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3 단계)

#64 법원 통역자에 관한 불만사항. 사법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통역자 기술의 품질과 정확도 및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필요 시 공인 등록 통역자가 모든 자격 표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정 조치를 허용합니다. 프로세스 개발 내용에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 2.891 (법원 통역자 기술 및 전문 행위의 정기적 검토에 관한 내용)을 개정, 취소,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토 프로세스가 작성되고 나면 시작 방법에 관한 정보를 법원 직원, 법관 및 변호사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일반 언어로 법원 이용자들(예: 영어 미숙자 및 법무 파트너)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단계)

#68 규칙 및 법률 갱신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이행 태스크 포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LAP 이행을 위해 이행 태스크 포스(Implementation Task Force)가 지속적으로 신규 법률이나 규정의 필요성 또는 기존 규정이나 법률의 수정을 평가합니다. (2, 3 단계)

#71 소액 청구 소송에서 예외를 삭제하는 입법. 사법위원회는 적격 통역자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원 소송절차의 정의에 소액 청구 소송이 포함되도록 입법부가 정부 법령 섹션 68560.5(a)를 개정하는 것을 후원해야 합니다. (2 단계)

#72 소액 청구 건에서 유자격 통역자를 요구하는 입법. 사법위원회는 소액 청구 사건의 통역자도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공인/등록 통역자이거나 이용 가능한 유자격 통역자가 없을 경우 예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도록 소액 청구 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섹션 116.550 개정을 위해 입법부를 후원해야 합니다. (2 단계)

#73 통역자 관련 양식의 업데이트. 사법위원회는 본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 시 통역자 관련 법원 양식(INT-100-INFO, INT-110, INT-120, INT-200)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단계)

#74 제1심 법원 통역자 고용 및 노동관계법 평가. 이행 태스크 포스는 제1심 법원 고용 및 노동 관계법이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 법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특정 일수를 초과하여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는 것에 관한 기존 요건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2 단계)

3 단계: 이들 권고사항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거나 2020년까지 완료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기본 절차와 시간 및 자원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즉시 시작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필요한 기본 절차가 구비된 후에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10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이 운영하는 절차에서 적격 통역자 제공. 자원이 허락할 경우 즉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법원이 모든 법원 명령에 의한 또는 법원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사에서 모든 영어 미숙 소송 당사자, 증인 및 사건의 특별 이해관계자들에게 적격 법원 통역자를 제공할 것입니다. (1, 2, 3 단계)

#35 언어 접근 키오스크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 전통적인 정보 배포 방식의 대안으로서 사법위원회는, 컴퓨터나 태블릿 플랫폼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로비와 기타 공공 대기구역에서 언어 접근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영어 및 최대 다섯 개의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다섯 개 언어의 선택은 법무 파트너들(법무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조직 및 기타 영어 미숙자 지원 업체)과 협력하여 그들의 정보를 통해 평가한 현지 지역 사회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합니다. 모든 해당 자료는 최소한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단계)

#51 인트라넷의 언어 접근 리소스. 지역 및 주 전체 언어 접근 자원, 본 계획을 통해서 파악된 교육훈련 구성요소, 용어집, 표지판 및 기타 언어 접근 서비스 제공 도구에 관한 정보는 개별 법원 인트라넷을 통하여 모든 법원 직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3 단계)

#53 정보 전파를 위한 파트너십. 법원은 현지 지역사회 조직(사회 서비스 제공자, 법률 서비스 조직, 정부 당국 및 소수민족 변호사 협회 등 포함)과의 기존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영어가 미숙한 법원 이용자들에 대한 법원 서비스를 향상하고 법원 정보와 교육을 지역사회 전체에 전파하기 위해 피드백을 수집해야 합니다. (3 단계)

#54 대중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다중 언어 오디오 / 비디오 레코딩. 접근성과 효율성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해 법원이 중요한 일반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서 다중 언어 오디오/비디오 녹음/녹화 기록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3 단계)

#55 미디어와 협조. 법원은 지역사회에서 언어 접근 서비스, 법원 프로세스 및 가용 법원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현지 미디어와 협조하고 언론 매체(자신들의 언어로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소수 민족 언론을 포함)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3 단계)

#65 주 전체 번역에 관한 불만사항. 번역 위원회(권고사항 36번 참조)는 이행 태스크 포스와 협조하여 사법위원회가 승인한 번역(사법위원회 양식, 캘리포니아 법원 온라인 자체 지원 센터 및 기타 사법위원회 발행 간행물 및 정보의 번역 포함)의 품질에 관한 불만에 대응하는 절차를 개발합니다. (3 단계)

#68 규칙 및 법률 갱신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이행 태스크 포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LAP 이행을 위해 이행 태스크 포스(Implementation Task Force)가 지속적으로 신규 법률이나 규정의 필요성 또는 기존 규정이나 법률의 수정을 평가합니다. (2, 3 단계)